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52호 | 발행인 : 우남희 | 발행일 : 2016년 9월 10일 |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9 September

장애유아 초등 취학유예에 체계적 지원 필요

I. 문제제기

- 201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총 2,032명이며, 취학유예 사유로는 장애가 474명(20.6%), 발육부진 257명(12.6%), 질병 66명(3.2%)이었음.¹⁾
 - ▶ 초등학교 취학유예란 부모가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하는 취학의무를 지니나,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 취학의무를 유예함을 의미함.²⁾
-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는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관련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취학유예 가능 대상이나 절차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³⁾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교육감 및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유아의 취학유예를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신청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유예와 관련하여 장애유아를 둔 부모, 보육·교육 기관의 장과 교사,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살펴보고, 장애유아를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 장애유아의 상당수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⁴⁾, 이 경우 취학유예가 부모의 판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 장애유아의 취학유예와 취학유예시 정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상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있음.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절차는 특수교육대상자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또는 초등학교 입학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연구과제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1)-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 2015)』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임.

1) 교육부(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51.

2)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및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3) 시각장애 등 11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4) 장애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할 당시 제시한 장애 등록 기준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기관당 1.3명으로, 병원의 진단서나 의사 진단서로 장애를 증빙한 경우(기관당 1.5명)나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를 제시한 경우(기관당 1.6명)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임(권미경 외, 2015, p.93).

II.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의사⁵⁾

1/3가량의 부모가 장애유아의 취학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수기관에 재원 중인 경우가 유예 예정 비중이 높았음.

- 장애유아를 둔 부모의 65.9%가 또래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예정이라고 응답한 반면, 34.1%의 부모들은 취학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응답함.
 - ▶ 보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의 경우 ‘취학을 유예하겠다’는 비율이 46.7%인데 반해,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의 경우에는 21.8%가 취학을 유예하겠다고 응답하여, 기관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특수 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의 56.0%가 취학을 유예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통합 기관과 일반 기관의 경우에는 각각 35.7%, 30.8%가 취학을 유예하겠다고 응답함.

〈표 1〉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의사

단위: %(명)

구분	취학유예 안함	취학유예 예정	계	$\chi^2(df)$
전 체	65.9	34.1	100.0(478)	
유아교육기관	78.2	21.8	100.0(242)	32.79(1)***
보육기관	53.3	46.7	100.0(236)	
특수기관	44.0	56.0	100.0(61)	8.69(2)*
통합기관	64.3	35.7	100.0(184)	
일반기관	69.2	30.8	100.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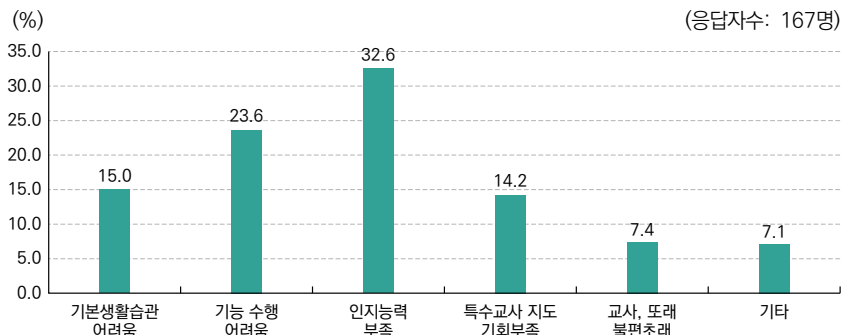
주: 1) 유아교육기관에는 특수교육기관, 특수학급 설치/미설치 유치원이 포함되며, 보육기관에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이 포함됨.

2) 특수기관은 특수교육기관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기관은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기관은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과 일반어린이집을 의미함.

자료: 권미경 외(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Ⅰ):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33.

* $p < .05$, *** $p < .001$.

- 장애유아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하는 이유는 자녀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이유로는 ‘인지능력의 부족’이 32.6%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수행의 어려움’ 23.6%, ‘기본 생활 습관 어려움’ 15.0% 순이었음.



[그림 1]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유예 이유

자료: 권미경 외(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Ⅰ):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41.

5) 장애 영유아 취학유예에 관한 설문조사는 장애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장 500명, 교사 502명, 재원 장애 유아 부모 478명의 응답 결과를 기초로 작성함.

Ⅲ. 장애유아 취학유예에 관한 찬반양론

장애유아의 취학유예 결정은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상의하여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장애유아의 취학유예 결정은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상의하여 판단해야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원장과 교사의 경우에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취학유예를 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각 29.7%와 27.1%였는데 반해, 부모들의 경우에는 10.3%만이 취학유예 결정을 전문가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음.
 - ▶ 장애유아의 취학유예를 반대하는 의견은 원장이나 교사보다 오히려 부모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남.

〈표 2〉 장애유아의 취학유예 결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유예 반대	부모 판단	전문가 판단	부모와 전문가 판단	계
원장	11.7	23.2	29.7	35.4	100.0(500)
교사	11.2	18.4	27.1	43.2	100.0(502)
부모	18.1	24.9	10.3	46.7	100.0(478)

자료: 권미경 외(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Ⅰ):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42.

취학유예 장애아에 대한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부모 70.0%, 원장의 56.8%, 교사의 47.6%가 찬성함.

- 대부분 취학유예 장애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원장, 부모, 교사에 따라 지원 대상은 일부 차이를 보였음.
 - ▶ 원장과 부모의 경우, 취학을 유예하더라도 동일하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각각 56.8%, 70.0%로 높았으며, 교사의 경우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유예한 경우에만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43.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 이는 부모의 경우 장애유아의 양육에 따르는 비용 부담 때문이며, 원장과 교사의 경우 취학유예아의 장기 재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됨.

〈표 3〉 취학유예아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유예 아동 동일하게 지원	전문가 판단일 때에만 지원	지원 반대	계
원장	56.8	34.6	8.6	100.0(500)
교사	47.6	43.3	9.1	100.0(502)
부모	70.0	28.8	1.2	100.0(478)

자료: 권미경 외(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Ⅰ): 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42.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장애유아의 교육받을 권리 및 적절한 발달을 위해 취학유예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의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취학유예가 가능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유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⁶⁾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 취학유예 찬성 입장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학교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예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임.
 - ▶ 취학유예 반대 입장은 장애유아의 적절한 발달을 위해서 취학유예를 금지해야 하고, 장애 유아의 취학유예로 인해 더 어린 연령의 장애유아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6) 전문가 의견조사는 반 구조화된 형태의 주관식 서술형 서면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총 16인의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결과임.

- ▶ 취학유예 찬반 모두 취학유예가 가능하더라도 유예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유예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표 4〉 장애유아 초등학교 취학유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취학유예 찬성 의견	취학유예 반대 의견
○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함. ○ 현실적으로 장애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유예를 막을 경우 부모들의 저항이 클 것임. ○ 유아교육과정이 생활중심, 경험중심, 놀이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애유아에게 초등학교보다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음.	○ 취학유예는 장애유아가 또래들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것임. ○ 초등학교령기 아이들은 유아기 때와는 발달 수준 및 교육 핵심 역량 등에서의 차이가 크므로, 초등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린이집에 나이가 많은 유아가 잔류함으로써, 더 어린 연령의 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음.

주: 권미경 외(2015)의 p.248-255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IV. 정책적 시사점

보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취학유예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보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취학유예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유아들의 취학유예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장애유아의 취학유예 절차는 부모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취학 유예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 ▶ 장애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에게 있어 초등 교육이 의무교육인 점을 감안할 때, 장애유아의 취학유예는 전문가와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장애유아가 취학유예 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기관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바람직한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위해 장애유아 뿐 아니라 부모와 초등학교 통합학급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
-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이 어려운 장애유아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지원이 끝나더라도, 금전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함.
 - ▶ 다만, 부모들의 무분별한 취학유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취학유예 결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취학유예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이 요구됨.

최효미 부연구위원 hmchoi@kicce.re.kr
권미경 부연구위원 mkkwon@kicce.re.kr